

「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」 신규조문대비표

2022. 12. 19. 제정 판 (시행 2023. 3. 1.) → 2023. 11. 27. 개정 판 (시행 2024. 3. 1.)

바뀜 2 · 신설 1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502/compare?from=1411&to=1489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6:08:32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모집 회수 및 시기) ① 계약학과 신입생 선발은 1년 단위로 한다. ② 모집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.	제13조(모집 회수 및 시기) ① 계약학과 신입생 선발은 학기 단위로 한다. <u>〈개정 2023-11-27〉</u> ② 모집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. ③ 계약학과 학생선발은 학교 입학/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해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. <u>〈신설 2023-11-27〉</u>
<신 설>	제14조의2(편입학) <u>[본조신설:2023.11.27.]</u> ① 계약학과 편입생 선발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모집할 수 있다. 선발은 계약학과 전형에 준하여 선발한다. ②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, B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 15학점, 박사18학점까지 인정하되 석사는 최소 1학기 이상, 박사는 최소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.
제16조(수업) ① 수업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되, 현장실습수업, 원격수업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수업의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수업을 편성하여야 한다. 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수업의 장소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.	제16조(수업) ① 수업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되, 현장실습수업, 원격수업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수업의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수업을 편성하여야 한다. 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수업의 장소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③ <u>원격수업은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수할 수 있다. 〈신설 2023-11-27〉</u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3조(모집 회수 및 시기) ① 계약학과 신입생 선발은 학기 단위로 한다.
② 모집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.
③ 계약학과 학생선발은 학교 입학/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해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조의2(편입학) [본조신설:2023.11.27.]① 계약학과 편입생 선발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모집할 수 있다. 선발은 계약학과 전형에 준하여 선발한다.
②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, B이상

인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 15학점, 박사18학점까지 인정하되 석사는 최소 1학기 이상, 박사는 최소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수업) ① 수업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되, 현장실습수업, 원격수업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 수업의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수업을 편성하여야 한다.

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수업의 장소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원격수업은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